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1. 개정 이유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해서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1항 및 제5항에서 위임한 분류·선별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유사 보건의료직군에 비해 부족한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을 확대하여 업무범위 확대 등에 따른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응급구조사 직무역량의 유지·향상을 도모하며,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된 5종 업무를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반영하는 한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 출동 및 처치기록지의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응급환자 분류 규정 정비 및 신설(안 제18조의3, 40조, 별지 16호)
- 1)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분류가 중증도 및 긴급도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화
 - 2) 구급차등 운용자의 응급환자 중증도·긴급도 분류 의무를 구체화하고, 세부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고시 제정 근거를 신설함
 - 3) 출동 및 처치 기록지 규정 및 서식에 병원 진 응급환자 중증도·긴급도 분류기준을 반영하고, 환자증상 및 처치상태 작성 항목을 개선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함
- 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 확대 등(안 제35조)

- 1) 의료기사 등 유사 보건의료 직군과 동일하게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
- 2) 군복무자, 해당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되어 있던 면제 대상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추가
- 3) 보수교육 유예 관련 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주체를 보수교육 실시기관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상향하고, 유예 대상자 기준을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등으로 명확화

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 5의2)

- 1) 응급실 전담인력기준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 내용에 응급처치 추가
- 2) 일반 운영기준에 검사 등에 필요한 인력 확보 규정 신설

라.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안 별표 14)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된 5종 업무를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반영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의 제목“(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을“(응급환자의 중증도·긴급도 분류 등)”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중 “중증도”를 “중증도·긴급도”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 중 “의 중증도를”을 “의 중증도·긴급도를”로 하고,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긴급도 분류기준”으로 한다.

제18조의3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긴급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긴급도를 분류하거나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할 때에는 환자의 주요증상, 활력징후(호흡, 맥박, 혈압, 체온), 의식 수준, 손상 기전,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긴급도 분류기준에 따른다. 다만 법 제18조제1

항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다른 기준에 따르도록 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제4호 본문의 “매년 4시간 이상”을 “매년 8시간 이상”으로 하고, 가목의 “6시간 이상”을 “12시간 이상”으로 하며, 나목의 “8시간 이상”을 “16시간 이상”으로 하며, 다목의 “10시간 이상”을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에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제35조제3항 중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5조제3항에 1,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제40조제1항 중 “중증도”를 “중증도·긴급도”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중증도”를 “중증도·긴급도”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중증도”를 “중증도·긴급도”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중증도”를 “중증도·긴급도”로 한다.

별표 5의2의 응급실 전담 인력기준 내 다) 응급구조사에 대한 인력기준 중 “재난, 교육, 전원관리 등을 위해”를 “재난, 교육, 전원관리, 응급처치 등을 위해”로 한다.

| 인 력 | 인력기준 | 비 고 |
|----------|---|------------------------------|
| 다) 응급구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교육, 전원관리, 응급처치 등을 위해 1급 응급구조사 5명 이상 구급차 운영을 위해 구급차 1대당 2명 이상 | 구급차 및 관련 인력은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 |

별표 5의2 2. 일반 운영기준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시설기준 및 장비기준에 따른 응급환자에 대한 검사 등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별표 14. 1호에 마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바.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사. 정맥로의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아. 심전도 측정 및 전송(의료기관 안에서는 응급실 내에 한함)

자. 응급 분만 시 태줄 걸찰 및 절단(현장 및 이송 중에 한하며,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 하에서만 수행)

별표 14. 1호 “마.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차.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8조의3, 제40조, 별지 제16호 서식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구급대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35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5의2, 별표 14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제13조제2항 관련)

1. 시설기준·장비기준·인력기준

가. 시설기준

- 1) 응급실 시설은 서로 인접하고 다른 의료시설과 구별되어야 하며, 응급실과 응급전용 중환자실·입원실 및 수술실, 검사실·중재실·MRI실 등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근접성을 갖추어 설치·운영해야 한다.
- 2) 감염병환자를 위한 음압격리병상 및 일반격리병상은 응급실 인근에 다른 구역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소아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별도 운영하는 경우 소아환자 진료구역도 응급실 다른 구역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 3) 응급실 입구 환자 분류소에서 감염의사환자를 선별하고, 일반 응급환자와 동선을 분리하여 음압격리병상 등에서 격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4) 응급실 전용 시설기준

| 시 설 | 시 설 기 준 | 비 고 |
|-----------------|--|-------------------------------|
| 가) 환자 분류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진입구와 인접하여 설치할 것 · 중증도 분류에 필요한 장비와 비품을 갖추는 것 ·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감염의사환자를 위한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비치할 것 |
| 나) 소생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20㎡의 전용면적을 확보하고, 각각의 내면이 3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환자 진입구 및 구급차출입구와 인접되게 설치할 것 |
| 다) 처치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20㎡의 전용면적을 확보하고, 각각의 내면이 3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감염방지를 위해 손세척이 가능할 것 | |
| 라) 응급환자 진료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병상마다 상지·하지 전동방식 높이조절 기능 및 시각적 차폐 시설을 갖추는 것 · 산소와 음압을 공급하는 설비를 갖추는 것 · 1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 병상 간 간격은 1.5m 이상을 확보할 것 |
| 마) 중증응급환자 진료 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통제가 가능한 별도의 구역으로 구성하고 무정전 시스템을 갖추는 것 · 각 병상마다 상지·하지 전동방식 높이조절 기능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및 시각적 차폐 시설을 갖추는 것 · 산소, 음압, 고압공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갖추는 것 · 8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 |
| 바) 음압격리 병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로부터 완전히 밀폐될 것 · 필터링된 급기·배기, 음압제어 및 환기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는 것 · 각 병상은 1인 격리실로 설치할 것 · 내부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것 ·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거나 손세척을 할 수 있는 진실을 갖추는 것 · 2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 일반격리병상은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 수에 포함됨 |
| 사) 일반격리 병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폐될 수 있을 것 · 각 병상은 1인 격리실로 설치할 것 · 내부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비를 갖추는 것 · 3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 |
| 아) 소아응급환자 진료 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병상마다 시각적 차폐 시설을 갖추는 것 · 산소와 음압을 공급하는 설비를 갖추는 것 · 3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아전문응급센터가 아닌 경우에만 적용 · 병상 간 간격은 1.5m 이상을 확보할 것 |
| 자) 방사선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 전 부위 촬영이 가능할 것 · 일반촬영실 · CT촬영실 |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인근에 설치할 것 |
| 차) 응급전용 입원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 병상당 4.3㎡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것 | 당일 응급의료 책임자가 입원·퇴원을 결정할 것. 다만, 전문진료과 중환자실 병상인 경우 입퇴원시 당일 |
| 카) 응급전용 중환자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다만, 20병상 중 10병상은 전문진료과의 중환자실내 응급전용 중환자병상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중환자실 규 | |

| | | |
|------------------|---|---|
| | 정을 준수할 것 | 응급의료 책임자의 동의를 받을 것 · 전문진료과 중환자실 내 병상은 응급전용임을 표기하고 환자 대장을 관리할 것 |
| 타) 응급전용 수술실 | · 병원 내 수술실 중 하나를 응급환자 전용으로 지정하여 사용할 것 · 응급환자 전용 수술실이 사용 중인 경우, 별도의 수술실 1실을 응급환자 전용으로 지정하여야 함 | 응급전용 수술실 사용권한을 당일의 응급의료 책임자에 부여할 것 |
| 파) 보호자 면담실 | · 외부로부터 시청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 · 환자의 상태 설명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 | |
| 하) 전용 주차장 | · 응급실 입구에 인접하고, 평면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할 것 · 응급환자 전용 표기가 되어 있을 것 | 구급차 2대 이상 주차 공간을 확보할 것 |
| 거) 보호자 대기실 | · 최소 100㎡의 전용면적을 갖출 것 · 입원환자의 인원수에 따라 면적을 조정할 수 있음 | 30명 이상이 동시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편의시설설치가 가능할 것 |
| 너) 회의실 | 20명 이상을 수용하여 교육·회의할 수 있도록 시청각 기자재 등을 갖출 것 | · 질 관리를 위한 컨퍼런스 등을 수행할 것 |
| 더) 재난 및 응급의료 지원실 | 재난, 교육, 의료지도 등 권역 내 응급의료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 · 응급실과 인접하지 않은 공간에 설치 가능함 |

5) 의료기관 시설기준

| 시 설 | 시 설 기 준 | 비 고 |
|----------|---|----------------------------|
| 가) 검 사 실 | · 혈액성분검사(CBC), 혈액화학검사(Chemistry), 동맥혈 가스분석(ABGA) 및 요검사(U/ | · 24시간 운영할 것 · 응급환자에 우선 |

| | | |
|-----------|---|-----------|
| | A)가 가능할 것 · 심근효소검사, 혈액응고검사가 가능할 것 | 사용되도록 할 것 |
| 나) MRI실 | · 신체 전 부위의 촬영이 가능할 것 · 산소와 음압을 공급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 |
| 다) 중재실 | · 위내시경실, 담관내시경실, 기관지내시경실 각각 1실 이상 갖출 것 · 혈관조영실, 심혈관조영실 각각 1실 이상 갖출 것 · 각 시설은 산소와 음압을 공급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 |
| 라) 혈액은행 | · ABO 및 Rh Typing, 교차 시험(Cross Matching), Coomb's Test 검사가 가능할 것 | |
| 마) 주산기 시설 | · 신생아실을 갖출 것 · 분만실을 갖출 것 | |

나. 장비기준

1) 응급실 전용 장비

| 품명 | 개 수(단위: 개) | | | | | | 비고 |
|---------------|------------|--------------|--------|----------|--------|--------|---------------------------|
| | 일반 구역 | 소아 구역 | 중증 구역 | 소생실· 처치실 | 중환자실 | 격리 병상 | |
| 가) 12유도 심전도기 | 1 | | 1 | | | | |
| 나) 심장충격기 | 1 | 1 (소아용 패드구비) | 1 | 1 | 2 | 1 | 전원연결 없이 사용, 동기화 심전환 가능할 것 |
| 다) 인공호흡기 | | | 5병상당 1 | 1실당 1 | 3병상당 1 | 5병상당 1 | 호흡방식 조절 가능, 경고장치가 있을 것 |
| 라) 무 영 등 | | | | 1실당 1 | | | |
| 마) 이동 X-선 촬영기 | 1 | | | | | 1 | |
| 바) 이동식 초음 | 1 | | | | | | 심초음파검사 |

| 과 검사기 | | | | | | | 가능할 것 |
|--------------------------|-----------|-----------|-----------|----------|-----------|-----------|-------------------------------|
| 사) 환자 감시 장치 | 5병상당 1 | 5병상당 1 | 1병상당 1 | 1실당 1 | 1병상당 1 | 1병상당 1 | 심전도, 혈압, 혈중산소포화도 측정이 가능할 것 |
| 아) 이동환자 감시장치 | 1 | | | | | | |
| 자) 기도흡입기 | 1병상당 1 | 1병상당 1 | 1병상당 1 | 1실당 1 | 1병상당 1 | 1병상당 1 | |
| 차) 산소량 조절장치 | 1병상당 1 | 1병상당 1 | 1병상당 1 | 1실당 1 | | 1병상당 1 | |
| 카) 급속혈액가온주입기 | | | 1 | | 1 | | |
| 타) 정맥 주입기 | 5병상당 1 | 5병상당 1 | 1병상당 1 | 1실당 1 | 1병상당 1 | 1병상당 1 | 약물 투여량의 정량 조절이 가능, 경고장치가 있을 것 |
| 파) 보온포 | | | | 1실당 1 | 1 | | 가온이 가능할 것 |
| 하) 중심체온 조절유도기 | | | | 1 | | | |
| 거) 심부체온 측정장비 | | | | 1 | | | |
| 너) 이동 심근 효소측정기 | | | 1 | | | | |
| 더) 연령별 기도확보 장비 및 보조호흡 도구 | | 1 | | | | | |
| 러) 소아를 위한 기타 연령별 기구·소모품 | | 1 | | | | | |
| 머) 무선장비 및 전산장비 | 1 | | | | | | TRS 단말기 구비, 응급의료정보 |

| | | 입력·조회 |
|--------|-------------------------|------------------------|
| 버) 구급차 | 특수구급차 1대 이상을 포함한 구급차 2대 | 응급실과 교신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출 것 |

2) 의료기관 내 확보해야 하는 장비

| 장 비 | 기 준 |
|-------------------------|---|
| 가) 뇌압감시장비 | 24시간 사용이 가능해야하며, 응급환자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할 것 |
| 나) 인공심폐순환기(ECMO) | |
| 다) 지속적 신 대체 요법(CRRT) 장비 | |
| 라) 인큐베이터 | |

다. 인력기준

○ 응급실 전담 인력기준

| 인 력 | 인력기준 | 비 고 |
|--------|--|--|
| 가) 의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 5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1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아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 응급실 전담전문의: 전년도 응급실 내원 환자수가 3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을 확보하고 매 10,000명마다 1명을 추가 확보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수에 포함 ※ 응급실 전담전문의는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중에서 확보할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급실 중환자 진료구역 내에는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응급실 일반 진료구역 내에는 24시간 의사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아전문응급센터인 경우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는 별표 6의 기준을 별도 적용 |
| 나) 간호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급실 전담 간호사 25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 간호사 1명 이상 확보 전년도 응급실 내원 환자수가 30,000명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급전용 중환자실 및 응급전용 입원실과 별도로 할 것 |

| | | |
|------------|---|--|
| | <p>초과하는 경우 3명을 추가 확보하고, 매 5000명마다 3명을 추가 확보할 것</p> <p>※ 소아응급환자 전담 간호사는 내원 환자당 추가 확보해야 하는 응급실 전담 간호사 수에 포함</p> | <p>※ 소아전문응급센터인 경우 소아응급환자 전담간호사는 별표 6의 기준을 별도 적용</p> |
| 다) 응급구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교육, 진원관리, 응급처치 등을 위해 1급 응급구조사 5명 이상 구급차 운영을 위해 구급차 1대당 2명 이상 | <p>구급차 및 관련 인력은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p> |
| 라) 그 밖의 인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호사, 응급구조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면허·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급의료 정보 관리 및 제공 업무를 전담할 것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시간 응급실 전담으로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

2. 일반 운영기준(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

- 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해 응급실과 각 전문진료과의 당직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 나.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불시에 발생하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중환자실과 일반병동의 예비병상, 응급전용 수술장 등을 확보해야 한다.
- 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가용가능한 응급의료 자원의 현황, 주요 응급질환별 수용가능 여부, 응급환자의 내원 및 퇴실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전송해야 한다.
- 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감염의사환자의 선별, 음압격리병상 등 감염예방 시설의 운영, 동선분리 및 감염예방활동, 보호자 및 방문객 출입통제 등 응급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 마.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조치 및 제18조의3에 따른 중증도 분류의 지도 및 시행을 위해 당일 근무하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중 응급의료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 바. 제18조의3에 따른 중증응급환자가 내원하면 응급실 전담전문의가 직접 진료해야 한다. 다른 전문진료과목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호출해야 하며, 호출된 전문의는 해당 환자를 신속히 진료해야 한다.

사. 중증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하게 이송하는 경우 당일의 응급의료 책임자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가 직접 이송을 결정해야 하며, 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 아.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진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어온 중증응급환자의 적극적 수용 등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매년 통과해야 한다.
- 자. 응급실 근무자 등은 소속, 전문과목, 면허·자격, 성명이 표기된 이름표를 달아야 하며, 면허·자격에는 전문의, 레지던트, 인턴,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 차.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책임 진료와 권역 내 재난·교육, 구급대에 대한 의료지도 등 그 밖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카. 법 제15조의2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에 규정된 다수사상자 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팀을 3개 이상 조직하되, 각 팀은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이상,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으로 각각 구성한다.
- 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시설기준 및 장비기준에 따른 응급환자에 대한 검사 등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제33조관련)

1.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가.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기(airway)의 삽입,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한다)

나. 정맥로의 확보

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라. 약물투여 :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마.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바.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사. 정맥로의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아. 심전도 측정 및 전송(의료기관 안에서는 응급실 내에 한함)

자. 응급 분만 시 태줄 결찰 및 절단(현장 및 이송 중에 한하며,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 하에서만 수행)

차.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2.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가. 구강내 이물질의 제거

나. 기도기(airway)를 이용한 기도유지

다. 기본 심폐소생술

라. 산소투여

마.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바.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사.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아.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차.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및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환자가 해당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앞쪽)

1. 요청 및 출동에 관한 사항

| | | | | | | | |
|---------------|----------------------------------|----|------------------------------------|---------|-------------------|----------|---|
| 요청 연월일* | 년 | 월 | 일 | 시 | 분 | 요청지(기관)* | 연락처 |
| 출동 연월일* | 년 | 월 | 일 | 시 | 분 | 이송의 종류* | ① 현장 이송 ② 의료기관간 이송 |
| 현장도착 연월일* | 년 | 월 | 일 | 시 | 분 | 이송지 주소* | ③ 미이송(사유:) ⑨ 기타() |
| 이송개시 연월일* | 년 | 월 | 일 | 시 | 분 | 출발지 명칭* | |
| 이송종료 연월일* | 년 | 월 | 일 | 시 | 분 | 도착기관 명칭* | 이송거리 km |
| 환자인계사·이송지도의사* | 면허번호 | 성명 | (서명) | 환자인수의사* | 면허번호 | 성명 | (서명) |
| 의료기관 선정자* | ① 환자/보호자 ② 의사 ③ 구급대(이송자) ⑨ 기타() | 성명 | ① 치료발던 병원 ② 전문진료 가능 ③ 근거리 ⑨ 기타:() | 의사통신방법* | ① 전화번호() ⑨ 기타() | 선정 방법* | ① 직접 연락 ② 구급상황관리센터 ③ 중앙응급의료센터 ④ 자체 판단 ⑨ 기타() |

2. 인적사항

| | | | | | | | | | |
|-----|-----------|--------------|-----|--------------|-----------------------------------|---|---|---|--------------|
| 환자 | 성명* | ([] 확인불가) | 성별 | ①남 ②여 | 생년월일 | 년 | 월 | 일 | [] 확인불가 |
| | 연락처 | ([] 확인불가) | 주소* | ([] 확인불가) | | | | | ([] 확인불가) |
| 보호자 | ① 있음 ② 없음 | 성명 | 연락처 | 관계 | ① 부모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친척 ⑤ 친지 ⑨ 기타() | | | | |

3. 출발시 환자상태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분류결과* | ① 소생 ② 긴급 ③ 응급 ④ 준응급 ⑤ 비응급 | 질병여부* | ① 질병 ② 질병의 | 의식수준* | ① A ② V ③ P ④ U | | | | |
| 의심질환명* | | | | | | | | | |
| 생체 징후 | 혈압 / mmHg | 맥박수 | 회/분 | 호흡수 | 회/분 | 체온 | ℃ | 산소포화도 | % |
| 환자증상 (중복가능) | ① 전신 ① 고열 ② 오한 ③ 마비 ④ 청색증 ⑤ 아나필락시스 ⑥ 기타 ② 신경계 ① 의식소실 ② 경련/발작 ③ 두통 ④ 감각이상 ⑤ 어지러움 ⑥ 기타 ③ 안면 ① 안면홍종 ② 이명 ③ 목통증 ④ 코피 ⑤ 이물감() ⑦ 기타 ④ 호흡기계 ① 호흡곤란 ② 호흡정지 ③ 객혈 ④ 기침 ⑤ 알레르기반응 ⑥ 기타 ⑤ 심혈관계 ① 심정지 ② 가슴불편감(흉통포함) ③ 두근거림 ④ 실신 ⑤ 기타 ⑥ 소화기계 ① 복통 ② 오심 ③ 구토 ④ 혈변 ⑤ 설사 ⑥ 변비 ⑦ 기타 ⑦ 외상 ① 골절() ② 탈구() ③ 뱀() ④ 열상() ⑤ 찰과상() ⑥ 타박상() ⑦ 절단() ⑧ 암계손상() ⑨ 화상() ⑩ 기타 ⑧ 기타 ① 응급분만 ② 기타 | | | | | | | | |
| 과거력 | ① 없음 ② 뇌혈관질환 ③ 고혈압 ④ 당뇨 ⑤ 결핵 ⑥ 간염 ⑦ 심장질환 ⑧ 암 ⑨ 기타: | | | | | | | | |
| 출발시 처치상태* | ① 기도: ① 없음 ② 기도기 ③ LMA ④ 기관내삽관 ⑤ 기관절개 ⑥ 기타: ② 호흡: ① 없음 ② BVM ③ 인공호흡기 ④ 비관 ⑤ 안면마스크 ⑥ 산소투여: 리터/분 ③ 순환: ① 없음 ② 심폐소생술 ③ 모나렐([] 혈압 [] 맥박 [] 산소포화도 [] 3유도심전도) ④ 12유도심전도 측정 ⑤ 정맥로확보 ⑥ 정맥혈채혈 ④ 약물: ① 없음 ② 정맥로1(수액명/잔여량): / ③ 정맥로2: / ④ 정맥로3: / ⑤ 경구투여: / ⑤ 고정: ① 없음 ② 경추 ③ 척추 ④ 상지 ⑤ 하지 ⑥ 기타: ⑥ 기타: ① 없음 ② 비위관(鼻胃管, L-tube) ③ 도뇨관 ④ 중심정맥 ⑤ 기타: | | | | | | | | |
| 기타 소견 및 처치 | | | | | | | | | |

4. 이송 중 경과 및 처치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분류결과* | ① 소생 ② 긴급 ③ 응급 ④ 준응급 ⑤ 비응급 | 의식수준* | ① A ② V ③ P ④ U | | | | | | |
| 생체 징후 | 혈압 / mmHg | 맥박수 | 회/분 | 호흡수 | 회/분 | 체온 | ℃ | 산소포화도 | % |
| 이송/도착시 처치상태* | ① 기도: ① 없음 ② 기도기 ③ LMA ④ 기관내삽관 ⑤ 기관절개 ⑥ 기타: ② 호흡: ① 없음 ② BVM ③ 인공호흡기 ④ 비관 ⑤ 안면마스크 ⑥ 산소투여: 리터/분 ③ 순환: ① 없음 ② 심폐소생술 ③ 모나렐([] 혈압 [] 맥박 [] 산소포화도 [] 3유도심전도) ④ 12유도심전도 측정 ⑤ 정맥로확보 ⑥ 정맥혈채혈 ④ 약물: ① 없음 ② 정맥로1(수액명/잔여량): / ③ 정맥로2: / ④ 정맥로3: / ⑤ 경구투여: / ⑤ 고정: ① 없음 ② 경추 ③ 척추 ④ 상지 ⑤ 하지 ⑥ 기타: ⑥ 기타: ① 없음 ② 비위관 ③ 도뇨관 ④ 태줄결찰 ⑤ 중심정맥 ⑥ 기타: | | | | | | | | |
| 기타 소견 및 처치 | | | | | | | | | |

5. 이송차량 및 이송자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이송차량* | 소속기관명* | 종별(차량, 자격, 면허)* | 번호(등록, 자격, 면허)* | 성명* |
| 운전자* | | ① 특수구급차 ② 일반구급차 ⑨ 기타() | | (서명) |
| 동승자* | | ① 1급 응급구조사 ② 2급 응급구조사 ③ 간호사 ④ 의사 ⑧ 없음 ⑨ 기타() | | (서명) |

비고 1.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으로 환자인계·인수의사, 운전자 및 구급대의 서명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이 표식은 반드시 저속입니다.

<신 설>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긴급도를 분류하거나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할 때에는 환자의 주요증상, 활력징후(호흡, 맥박, 혈압, 체온), 의식 수준, 손상 기전,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긴급도 분류기준에 따른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여러명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다른 기준에 따르도록 할 수 있다.

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1~3. (생 략)
- 4. 보수교육의 시간: 매년 4시간 이상. 다만, 1년 이상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그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에 관하

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① (현행과 같음)

- 1~3. (현행과 같음)
- 4. 보수교육의 시간: 매년 8시간 이상.

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6시간 이상

나.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8시간 이상

다.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0시간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구조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 1. 군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2. 해당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신 설>

③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

-----.

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2시간 이상

나.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6시간 이상

다.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0시간 이상

②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 2. (현행과 같음)

3.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 사유가 해소된 후 그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40조(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①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이하 “응급구조사 등”이라 한다)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와 응급처치의 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기록해야 한다.

② 응급구조사등은 제1항에 따라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와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3부 작성하여 그 응급환자를 인수한 의사의 서명을 얻은 뒤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며, 1부는 이송처치료징수

-----.

1.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제40조(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① -----

-----, -----
-- 중증도·긴급도-----

-----.

② -----
-----, -----중증도·긴급도-----

용으로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발급한다.

③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응급구조사등이 작성하여 제출한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와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④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와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응급의료지원센터로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제출해야 한다.

⑤ (생략)

-----.

③ -----

---, ----- 중증도·긴급도-----

-----.

④ -----
-----, -----
----- 중증도·긴급도-----

-----.

⑤ (현행과 같음)